

의안번호	제2972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 사항	
----------	--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5. 7. 4.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2972호
----------	--------

제출연월일: 2025. 7. 4.
제출자: 고성군수

1. 폐지이유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고성화력발전소(現 고성하이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지원 및 환경개선 등과 관련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하여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서 고성화력발전소 완공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고성화력발전소가 2021년 11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하고 있어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도래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5-812호

가) 예고기간: 2025. 4. 30. ~ 2025. 5. 2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고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 주 열

□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2013.09.30 조례 제2128호

(일부개정) 2014.10.13 조례 제2156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07.04 조례 제2266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01.01 조례 제2455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11.04 조례 제2760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3.02.24 조례 제2787호 (타조례개정)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08.08 조례 제2897호 (다른 조례의 개정)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2.20 조례 제2926호 (일괄개정)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과 주변 환경개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복지 증진 및 이주대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양·대기오염 등의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지역의 현안사항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2. 경제기업과장 <개정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3. 하일면장

4. 하이면장

5. 관할 지역의 주민 중 관할 면장이 추천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고, 선출직인 경우 그 임기까지 한다.

⑤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협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담당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회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2조(비밀의 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13.09.30. 조 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고성화력발전소 완공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

㉕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㉔~㉕ 생략

부 칙<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㉕ 생략

㉕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

㉕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2024. 12. 20. 조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